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추경호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투자 여력 보완 및 필수 사회기반 시설의 조기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임.

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이 중요하므로,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적극적 보증공급이 필요함.

그러나 최근 민간투자사업비가 5,0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개별사업 규모에 비해 신용보증 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, 시장 금리 상승으로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 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였음.

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(보증의 한도)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5,000억원에서 7,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기관과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7. 29. ~ 9. 6.) 예정

3)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제1호 중 “5천억원”을 “7천억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보증의 한도) ①(생략)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금전채무(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 외한다)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: <u>5천억원</u>	제29조(보증의 한도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----- ----- : <u>7천억원</u>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453